

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
서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정지웅 위원입니다.
-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제2조제3호는 산업(문화예술)정보학교 중 본 조례의 적용 제외학교를 열거하고 있습니다.
- ‘서울온라인학교’가 신설되어 적용 제외학교에 추가됨에 따라 동 조항을 개정해야 하나, 현행 문장은 제외학교가 추가될 때마다 매번 개정해야 하는 구조로, 앞으로도 반복적인 개정에 의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동 조례안은 제2조 제3호 산업(문화예술)정보학교에 대한 적용범위를 정비하여 '산업정보학교, 문화예술정보학교 명칭이 있는 학교'로 개정하고자 합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을 참고해 주시고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